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3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주진우 · 박충권 · 서지영
김민전 · 백종현 · 나경원
임이자 · 안철수 · 신동욱
김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직후, 해군 장병 실종 수색 당시,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등 국가적 인명 사고와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음. 특히 대구 사고에서는 오전 10시 50분 인명구조가 종료됐음에도 청와대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대통령의 구조 지시를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 부실과 사고 보고·지시 경위의 왜곡 문제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임.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군 골프장의 앞뒤 이용 시간을 비우고 전용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골프’ 특혜 정황도 드러났음. 대통령 일가의 골프 비용과 경호·이동 경비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군 시설과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임.

대통령 일가의 특혜 문제는 골프장에 그치지 않음. 장남 이동호씨의 대통령 관저 거주 정황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저 공사 과정에서도 가족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 시설과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대통령 일가의 사적 편의를 위한 국가권력 남용과 예산 유용은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 대통령실 및 경호처 등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수사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와 관저 공사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및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이재명 대통령의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해군 장병 실종, 대구 천장 붕괴 사고 관련 골프장 이용 및 직무수행상 위법행위,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와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

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기한 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수사인력을 두고, 관계 기관 및 관련 업체에 자료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수사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수사 완료 후 공소청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2026년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같은 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남수원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사고 대응 관련 위법행위 사건
2. 2026년 7월 12일 해군 장병 실종 및 수색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군 통수권자로서의 직무수행 관련 위법행위 사건
3. 2026년 10월 10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의 태릉CC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특혜 제공,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및 사고 보고·지시·대응 과정의 위법행위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군·공공 골프장의 예약·이용 제한, 전용시설 제공, 경호차량 등 국가 장비 및 인력의 사

적 동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국가 예산의 부당 집행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 외에 이재명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혜 제공 및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사건

6.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대통령 관저 거주 및 입주 과정에서의 부당한 특혜 제공, 그 거주와 사적 편의를 위한 청와대·대통령 관저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변경 및 국가 예산의 부당 집행 사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및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관련 범죄를 은폐·무마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

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는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그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방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계약·회계 자료, 경호·이동 기록,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한다.

⑤ 특별검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공소청법」(제4조제5호·제6호는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에게 준용한다.

⑦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한 권한,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⑧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운영업체, 시설공사업체 및 그 밖의 관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별검사보 4명을 모두 임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임명되지 아니한 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부족한 인원이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

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는 사건을 인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광역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지방공소청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 전임 특별검사와 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제9조제6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어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고와 업무 관련 서류의 인계를 완료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인계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

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또는 공소유지 중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의 이첩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의 이첩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수사기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

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7항·제8항 및 제11조(제9조제8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사건의 처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